

# 우리나라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 체계의 실업함정 가능성

황수경·윤남희\*

## I. 머리말

조세 및 사회보장체계는 개인과 가족구성원의 근로동기나 취업인센티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회보장급여를 통한 소득보장과 근로유인간에는 일정한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개인들의 적극적인 취업유인이 줄어 고실업의 문제가 파생될 수 있으며, 관대한 사회보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조세부담을 요구하게 되어 재정 비효율화를 가속화시킨다. 이 때문에 높은 소득세율과 높은 사회보장급여로 특징지어지는 서구복지국가들이 최근 근로유인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조세 및 사회보장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구복지국가들처럼 사회보장급여 체계가 실업자의 재취업을 방해하고 근로의욕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에 따른 근로유인 저하는 어느 정도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일까? 이 글은 OECD Tax-Benefit system을 이용한 국가간 비교자료<sup>1)</sup>를 토대로 우리나라 조세와 사회보장급여 체계의 근로유인 저하 가능성을 국제비교 관점에서 점검해 보고자 한다.

\* 황수경=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소장(skhwang@kli.re.kr), 윤남희=한국노동연구원 객원연구원(pinchy2@hanmail.net).

1) OECD(2004), *Benefits and Wages*, Paris.

## II. 근로유인 지표(Work Incentive Indicators)

### 1. 소득보장과 근로유인의 딜레마

사회보장급여는 저소득계층과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극단적인 빈곤의 위험을 방지하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사회보장급여는 소득보장의 효과와 함께 실업자의 취업유인을 떨어뜨리고 도덕적 해이라는 부작용도 발생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사회보장급여인 실업급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이라는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상실한 소득의 일정수준을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기간이 관대하고 급여수준이 높으면 실직기간 중 적극적인 구직 유인이 사라져 실업기간이 길어지고 실업상태에 머무를 가능성도 높아진다. 즉,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생계를 안정시켜 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약화시켜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실제 사회보장제도가 지나치게 관대한 서구복지국가의 경우 높은 사회보장급여로 인해 근로 동기 약화 및 고실업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OECD와 EU국가들이 근로유인을 강조하는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Making work pay policy)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OECD, 1996, 2004).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장 수혜율이 낮고 사회보장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경우 실업자나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를 낮추면 근로유인은 높일 수 있으나 동시에 저소득계층과 취약계층에게 빈곤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저소득계층과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소득보장 정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공급에 미칠 효과, 즉 근로유인을 훼손할 여지가 없는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 2. 순소득대체율(Net Replacement Rate)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 가장 많이 알려진 지표는 사회보장급여의 충분성을

측정하는 소득대체율(Replacement Rate)이다. 소득대체율은 실직상태에서 받는 소득(사회보장급여)을 취업시 개인이 받았던 소득의 비율로 나타낸 수치로 근로자가 실업이 되면 고용되었을 때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text{소득대체율} = \frac{\text{사회보장급여}}{\text{취업시 소득}}$$

세후 소득을 기초로 한 순소득대체율(NRR: Net Replacement Rate)은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 체계에 의한 근로유인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y_e$ 는 취업시 순소득,  $y_u$ 는 실업시 순소득을 의미한다고 하면 순소득대체율은 다음과 같이 묘사될 수 있다.

$$NRR = \frac{y_u}{y_e} = 1 - \left[ \frac{y_e - y_u}{y_e} \right]$$

실업시 순소득(사회보장급여,  $y_u$ )은 한 개인이 실업자로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이기 때문에 노동공급 결정을 함에 있어 유보임금(reservation wages)으로 작용한다. 한편 취업시 순소득(세후 소득,  $y_e$ )은 그 개인이 취업하였을 때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이 될 것이므로 유보임금과의 격차가 바로 개인이 취업시 얻게 되는 금전적 이득이 된다. 위 식의 두번째 항은 취업시 금전적 이득을 소득규모로 나눈 값으로 취업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NRR은 취업인센티브와는 역의 관계를 취하게 된다.

순소득대체율은 근로소득( $w$ ), 조세( $t$ ), 사회보장급여( $b$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따라서 NRR은 사회보장급여가 클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조세부담이 클수록 큰 값을 갖게 된다.

$$NRR = \frac{b}{w-t}$$

<표 1>은 OECD Tax-Benefit system을 이용하여 OECD국가들의 근로자 소득수준별, 가구특성별 실직 직후 순소득대체율을 살펴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NRR은 근로자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지나 조세시스템이 매우 누진적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등). 또한 부양가족이 있거나 편부모가구와 같이 애로계층에 속하는 경우 다른 가구원들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회보장급여가 증가하여 NRR이 높아진다.<sup>2)</sup>

2) 자녀 중 육아지원대상 여부를 판별하기 곤란하여 육아지원제도는 고려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저소득자 단신가구 기준(53%)으로는 OECD 28개국 중 아일랜드, 호주, 체코, 이탈리아에 이어 다섯번째로 순소득대체율이 낮은 국가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NRR이 낮아지는 다른 OECD국가들과 달리 우리의 경우 NRR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평균소득자(54%), 고소득자 기준(42%)으로는 중하위권 정도에 해당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맞벌이가구를 제외하면 가구특성별로 NRR에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소득(APW의 67%)이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

〈표 1〉 실직후 첫번째 달의 순소득대체율(2002년)

(단위: %)

	저소득자				평균소득자				고소득자			
	단 신	자녀 2명			단 신	자녀 2명			단 신	자녀 2명		
		편부모	외벌이	맞벌이		편부모	외벌이	맞벌이		편부모	외벌이	맞벌이
호 주	46	61	79	65	32	54	66	54	24	41	50	46
오스트리아	55	75	78	85	55	71	73	81	55	65	67	77
벨기에	87	82	77	93	66	66	61	80	49	51	47	68
캐나다	63	67	68	87	64	75	76	85	44	57	57	68
체 코	50	55	55	78	50	54	54	74	50	54	54	69
덴마크	84	95	96	93	59	75	76	78	45	60	60	66
핀란드	78	90	88	87	64	83	82	81	50	67	65	71
프랑스	80	91	90	91	71	76	76	82	70	69	69	79
독 일	63	90	83	99	61	83	78	96	62	79	71	91
그리스	64	74	74	77	46	50	50	62	33	36	36	50
헝가리	61	71	70	82	44	55	54	71	34	45	44	62
아이슬랜드	66	80	68	87	49	65	57	76	35	51	45	64
아일랜드	40	60	68	79	29	54	55	67	22	40	40	54
이탈리아	50	54	56	81	52	60	60	76	46	57	59	67
일 본	73	81	70	88	63	74	61	81	62	63	61	76
한 국	53	54	52	77	54	54	53	73	42	42	41	61
룩셈부르크	84	90	90	94	85	89	89	93	87	92	89	91
네덜란드	79	85	89	85	71	78	78	83	61	65	64	74
뉴질랜드	54	77	82	63	37	62	67	51	26	45	48	41
노르웨이	66	89	84	86	66	81	73	83	53	63	59	72
폴란드	65	67	60	79	44	50	51	64	32	30	34	50
포르투갈	85	85	85	92	78	76	77	87	83	80	78	87
슬로바키아	69	76	77	83	62	69	72	82	44	52	54	67
스페인	76	77	77	89	70	76	75	87	48	62	62	75
스웨덴	82	92	90	92	81	90	83	90	58	69	61	73
스위스	79	81	81	90	72	82	82	88	72	82	81	87
영 국	63	47	48	73	45	46	46	61	31	34	34	49
미 국	62	54	52	83	56	54	53	76	40	39	38	62

주 : 1) 평균소득자는 생산직 근로자 평균임금(APW) 수준을 받는 근로자를 가정하고 저소득자는 APW의 67%, 고소득자는 APW의 150%를 받는 것으로 가정.

2) 맞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취업상태는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임금은 APW의 67%를 받는 것으로 가정.

자료 : OECD, *Benefits and Wages*, 2004.

〈표 2〉 실직후 60번째 달의 순소득대체율(2002년)

(단위: %)

	저소득자				평균소득자				고소득자			
	단 신	자녀 2명			단 신	자녀 2명			단 신	자녀 2명		
		편부모	외벌이	맞벌이		편부모	외벌이	맞벌이		편부모	외벌이	맞벌이
호 주	45	61	79	65	32	54	66	54	24	41	50	46
오스트리아	64	82	100	71	51	68	78	68	51	61	63	65
벨기에	72	82	77	86	55	66	61	75	40	51	47	63
캐나다	31	63	68	68	22	55	59	58	15	41	44	47
체 코	45	77	91	60	31	59	71	51	21	43	53	40
덴마크	71	85	82	71	50	72	78	60	37	58	61	51
핀란드	69	77	94	75	51	66	85	64	37	52	64	53
프랑스	56	81	83	63	41	63	70	52	29	44	48	42
독 일	82	92	84	79	61	76	68	77	54	69	64	74
그리스	0	4	4	51	0	3	3	41	0	2	2	33
헝가리	33	41	39	58	24	31	30	49	18	26	25	43
아이슬랜드	66	80	90	87	49	65	74	76	35	51	59	64
아일랜드	71	66	90	63	51	59	73	54	38	45	54	43
이탈리아	0	0	0	61	0	0	0	53	0	0	0	43
일 본	50	92	87	63	34	74	71	52	23	52	51	41
한 국	25	58	72	50	17	39	49	40	12	28	34	33
룩셈부르크	70	84	107	56	50	61	78	47	37	46	56	38
네덜란드	79	78	87	61	58	64	72	52	39	45	50	41
뉴질랜드	54	77	82	63	37	62	67	51	26	45	48	41
노르웨이	60	79	86	56	42	65	64	47	31	49	48	39
폴란드	45	75	85	64	30	55	73	52	21	37	50	41
포르투갈	34	61	69	77	24	50	61	64	17	36	50	51
슬로바키아	62	91	100	71	42	68	91	60	29	50	67	49
스페인	37	54	59	53	27	38	41	44	19	27	30	35
스웨덴	74	66	100	58	51	55	78	48	37	43	57	40
스위스	73	91	99	55	51	65	71	46	36	46	50	36
영 국	63	66	78	71	45	64	73	60	31	48	55	48
미 국	10	44	50	58	7	35	41	49	5	25	30	40

주: 1) 평균소득자는 생산직 근로자 평균임금(APW) 수준을 받는 근로자를 가정하고 저소득자는 APW의 67%, 고소득자는 APW의 150%를 받는 것으로 가정.

2) 맞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취업상태는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임금은 APW의 67%를 받는 것으로 가정.  
 자료: OECD, *Benefits and Wages*, 2004.

체계가 근로자의 가구특성을 거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는 실직한 근로자의 60번째 달의 순소득대체율을 살펴본 것이다. 베네룩스 3국을 비롯하여 전통적인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는 5년의 장기실업자에 대해서도 NRR은 대체로 실업 직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는 NRR이 100을 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5년의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을 때가 취업시보다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연히 근로유인이 생길 여지가 없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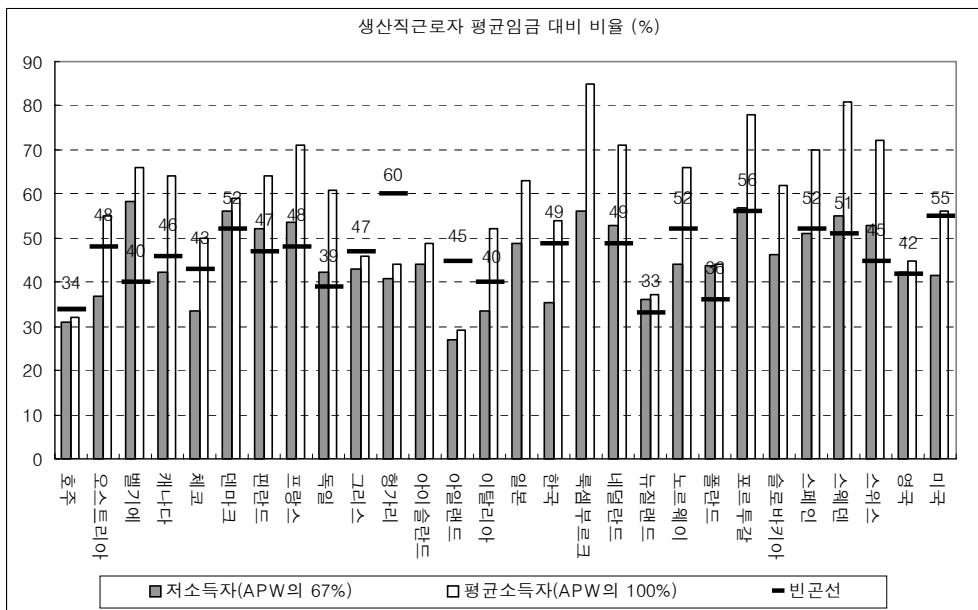
그러나 그 밖의 국가들에서는 장기실업 상태에 있을 경우 NRR이 대략 3분의 2 수준

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그리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5년째 실업상태가 지속된 실업자의 NRR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미국의 경우도 단신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장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단신가구에서 NRR이 절반 이하 수준(25%)으로 떨어지며,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NRR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외적인 경우가 저소득층의 편부모 또는 외벌이가구의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사회보장급여로 인해 실직 직후보다 오히려 높은 NRR을 보이고 있다.

소득보장의 관점에서 보면 실업전의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NRR이 높다고 해도 여전히 빈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빈곤선을 각국 중위임금의 50% 수준으로 정의했을 때, 이를 생산직 근로자 평균임금(APW)으로 환산하면 대략 40%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OECD국가에서 저소득자는 빈곤선 이하의 소득에 머물게 되고, 일부 국가(호주, 그리스, 아일랜드 등)에서는 평균소득자의 경우도 빈곤선 이하의 소득수준에 머물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저소득층의 소득보장 수준은 빈곤선(49%)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소득보장 수준과 빈곤선(단신가구)



- 주: 1) 소득보장 수준은 소득수준에 순소득대체율(실직 첫째 달의 단신가구)을 곱한 값.
- 2) 빈곤선은 각국 중위임금의 50% 수준을 상정하여 생산직 근로자 평균임금(APW) 대비 비중으로 환산한 수치임.
- 3) 한국의 빈곤선은 원자료를 이용하여 별도 계산.

자료: OECD, *Benefits and Wages*, 200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01 원자료.

### 3. 한계유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s)

순소득대체율(NRR)은 가구 내에서 한 사람이 실직하였을 때 소득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하락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근로유인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게 해준다. 그러나 NRR은 상당정도 가구내 다른 잠재소득원(예컨대,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가 개인의 근로행태에 직접적으로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가 한계유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s : METR)이다. 본래 한계유효세율은 기업의 투자시 조세부담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인데, 소득변화가 있을 때 조세와 사회보장급여가 얼마만큼 소득을 감소시키는지 보여줌으로써 개인이 취업여부 및 근로시간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미치는 금전적 비유인(disincentives)의 정도를 측정하게 해준다.

한계유효세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ETR = 1 - \frac{\Delta y_{net}}{\Delta y_{gross}}$$

여기서  $\Delta y_{net}$ 는 순소득의 변화,  $\Delta y_{gross}$ 는 총소득의 변화를 의미한다. 개인의 경제활동상태가 A에서 B로 변화할 때 근로자의 소득, 조세, 사회보장급여를 각각  $y$ ,  $t$ ,  $b$ 로 나타내면 METR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begin{aligned} METR &= 1 - \frac{(y_B - t_B + b_B) - (y_A - t_A + b_A)}{y_B - y_A} \\ &= \frac{(t_B - b_B) - (t_A - b_A)}{y_B - y_A} \end{aligned}$$

따라서 한계유효세율이 높다는 것은 증가되는 소득에 비해 세금 증가분이 많거나 취업 또는 소득증가로 인해 수혜자격을 잃게 되어 사라지게 되는 사회보장급여(주로 실업급여) 감소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 수치가 높게 되면 실업자는 재취업을 할 유인이 적어지게 되고 실업함정(unemployment trap)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높은 한계유효세율에 직면한 실업자들은 취업을 꺼리거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직업을 구하게 되고 사회보장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을 과소보고하는 행태를 보이게 된다.

한계유효세율은 실업함정 외에도 저임금함정(low-wage trap 혹은 poverty trap), 비경

제활동합정(inactivity trap)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로도 사용될 수 있다. 즉, 실업자의 METR은 주어진 일자리를 택했을 때 발생하는 조세 증가분 및 사회보장급여 감소분의 비율로서 실업합정의 지표가 되는 반면, 취업자의 METR은 개인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의 변화 비율로 정의되어 저임금합정의 지표가 되고,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자의 METR은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으로 이동시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실업급여 제외)의 변화 비율로 측정되어 비경제활동합정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Carone et al., 2004).

〈표 3〉 취업상태 변화시 한계유효세율(2002년)

(단위: %)

	실업 => 파트타임				실업 => 풀타임				파트타임 => 풀타임			
	단 신	자녀 2명			단 신	자녀 2명			단 신	자녀 2명		
		편부모	외벌이	맞벌이		편부모	외벌이	맞벌이		편부모	외벌이	맞벌이
호 주	66	69	70	45	49	60	70	38	32	72	70	32
오스트리아	70	83	83	73	68	74	76	73	40	39	60	40
벨기에	103	94	88	99	80	73	69	78	57	57	50	57
캐나다	83	74	76	93	72	78	79	80	32	56	61	40
체 코	96	94	95	97	62	61	60	64	27	40	48	31
덴마크	76	85	86	76	77	82	82	77	48	57	88	48
핀란드	74	84	84	69	75	84	86	76	50	64	85	42
프랑스	75	80	80	72	78	79	79	76	36	62	73	30
독 일	101	111	105	140	77	87	82	96	54	66	55	52
그리스	33	39	39	16	56	57	57	46	20	16	16	16
헝가리	80	87	87	80	60	59	59	59	41	31	31	39
아이슬랜드	81	86	76	86	60	66	55	66	39	46	45	46
아일랜드	36	34	44	46	41	31	55	50	30	75	50	30
이탈리아	92	100	103	95	65	66	65	70	38	33	26	44
일 본	18	33	14	20	56	63	52	60	21	71	66	27
한 국	45	46	44	45	35	36	35	35	9	10	13	9
룩셈부르크	85	80	80	78	88	89	89	88	30	34	79	16
네덜란드	75	77	78	73	73	75	76	79	51	60	64	46
뉴질랜드	66	60	70	47	49	68	72	35	32	76	74	23
노르웨이	76	91	78	78	76	84	78	78	34	56	41	34
폴란드	89	74	75	82	62	65	65	58	34	57	61	34
포르투갈	79	79	79	78	82	78	78	80	22	49	59	19
슬로바키아	111	109	109	117	69	70	72	73	26	37	83	29
스페인	79	81	79	86	76	79	77	81	29	25	22	28
스웨덴	87	91	87	87	87	91	87	87	35	55	65	35
스위스	75	82	81	80	77	84	83	83	26	37	47	27
영 국	78	14	18	57	58	50	51	44	37	87	84	32
미 국	70	50	43	66	67	61	58	65	29	51	53	26

주: 1) 실질전 평균소득자(=APW의 100%)를 가정하고 사회보장급여는 실업 직후 수준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2) 파트타임은 풀타임의 1/2시간 근무하는 자로 정의됨.

자료: OECD, *Benefits and Wages*, 2004.



<표 3>은 OECD Tax-Benefit system을 이용해 각 국가에서의 실업자 및 파트타임 취업자의 한계유효세율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실업자가 파트타임으로 취업할 때의 한계유효세율은 70~90%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파트타임 취업시 조세부담(사회보장급여 감소 포함)이 추가된 소득보다 커(METR>100) 명백히 파트타임 취업유인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실업→파트타임의 한계유효세율은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약 45% 수준으로 일본, 그리스, 아일랜드에 이어 METR이 네번째로 낮은 국가에 해당된다.

한편 실업자가 풀타임으로 취업할 때의 한계유효세율은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35% 정도로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가구유형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한계유효세율이 대체로 50~80% 수준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도 파트타임 취업과는 달리 풀타임 취업의 METR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파트타임에서 풀타임 취업시의 METR도 우리나라가 10% 미만의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계유효세율의 규모는 주로 그 국가의 조세제도와 실업급여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우리나라가 유럽국가들에 비해 METR이 낮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표 4 참조). 스웨덴의 경우 조세부담률은 51.4%에 이르고 이 중 개인소득세가 전체 조세규모의 31.9%를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27.2%로 멕시코에 이어두 번째로 낮은 조세부담을 지고 있으며, 더욱이 이 중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4.1%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체코, 슬로바키아에 이어 세번째). 취업시 소득세로 빠져나가는 금전적 손실이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이다.

<표 4> 주요국의 조세구조(2001년)

(단위: %)

	GDP대비 조세비중		조세구조(항목별 구성비)					
			개인소득세	기업소득세	사회보장기여		소비세	기타
					근로자	고용주		
미 국	28.9	(27)	42.3	6.5	10.8	12.5	16.1	11.8
영 국	37.3	(13)	30.2	9.5	6.8	9.6	31.3	12.6
스웨덴	51.4	( 1)	31.9	5.7	5.6	23.6	25.1	8.1
프랑스	45.0	( 6)	17.7	7.6	9.0	24.9	25.2	15.5
독 일	36.8	(15)	27.1	1.7	17.5	19.5	28.8	5.4
일 본	27.3	(28)	20.1	12.7	15.1	18.8	19.0	14.4
한 국	27.2	(29)	14.1	12.3	10.7	7.5	39.6	15.7
멕시코	18.9	(30)	28.0	-	17.0	-	51.5	3.5
OECD 평균	36.9		26.5	9.4	7.9	15.2	31.3	9.7

주: OECD 평균은 30개 회원국의 단순평균이며, ( )안의 수치는 조세비중이 높은 순위임.

자료: OECD, *OECD in Figures*, 2004.

실업급여 수준이 낮은 것도 우리나라 근로자의 한계유효세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보장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유럽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실업상태가 지속될수록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취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조기재취업수당과 같은 정부의 지원도 METR을 낮춰 근로유인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경우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의 근로비유인 효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실업함정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풀타임 취업에 따른 한계유효세율이 작기 때문에 파트타임 취업보다는 풀타임 취업을 선호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풀타임 취업에 따른 METR이 파트타임 취업의 경우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일본의 경우와는 매우 대조적인 양상이다.

### III. 맺음말

지금까지 순소득대체율과 한계유효세율이라는 지표를 이용한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와 사회보장급여 체계의 실업함정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낮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한계유효세율은 우리의 조세 및 사회보장체계가 근로유인 저하를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지나치게 낮은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빈곤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조세와 사회보장급여 체계는 근로자의 가구특성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정책목표의 관점에서 많은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타깃별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세와 사회보장급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파트타임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여 현재 풀타임 취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한계유효세율을 낮춰줌으로써 여성, 고령자 등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end

### 참고문헌

Carone, G., Immervoll, H., Paturot, D., Salomaki, A.(2004), "Indicators of Unemployment and

Low-Wage Traps”, OECD SEM WP(2004-3).

OECD(1996), “Chapter 2: Making work pay”, in *Employment Outlook*, Paris.

\_\_\_\_\_ (2004), *Benefits And Wages*, Paris.

\_\_\_\_\_ (2004), *OECD in Figures*, 2004.

Pearson, M. and Scarpetta, S.(2000), “An Overview: What Do We Know About Policies To Make Work Pay?”, OECD *Economic Studies*, No.31.